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기본약관

제1조(목적)

- ①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정의됨)의 원활하고 공정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용자와 은행간 체결한 개별 약정사항을 준수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판매업체가 은행과 제휴된 중심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함에 따라 취득한 정산채권을 은행이 매입하고 판매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중심업체(또는 PG사)로부터 정산일에 정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중심업체, PG사 또는 판매업체를 말합니다.
3. "e 커머스 마켓" 또는 "마켓"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거래 공간을 말합니다.
4. "중심업체"라 함은 판매업체가 마켓에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상거래 판매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수취하고, 판매업체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마켓 운영기업을 말하며,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판매업체가 매각하는 정산채권을 정산일에 은행에 지급 및 결제합니다.
5. "판매업체"라 함은 마켓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셀러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
6. "PG사"라 함은 중심업체를 대신하여 정산채권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7. "정산채권"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마켓에서 재화 등을 판매함에 따라 중심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대금 채권을 말하고, "대상 정산채권"이라 함은 판매업체의 정산채권 중 중심업체가 전자적수단으로 은행에 채권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동의한 채권을 말합니다.
8. "팩토링 신청"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은행에게 대상 정산채권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통하여 즉시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팩토링 실행"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은행에게 팩토링 신청을 한 후 은행이 이 약관 및 판매업체 이용약관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팩토링채권"이라 함은 은행이 팩토링 실행을 완료한 정산채권을 말합니다.
11. "팩토링 이자"라 함은 은행이 정산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팩토링 실행일부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12. "정산일"이라 함은 중심업체가 판매업체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13. "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은행이 매입완료한 정산채권에 대하여 건별 채권 만기일에 중심업체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판매업체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4. "채권양도"라 함은 판매업체가 중심업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상 정산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팩토링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6. "접근매체"라 함은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바.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17.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행, 중심업체 또는 은행이나 중심업체가 지정한 사업자가 제공)을 말합니다.
18. "판매업체 이용약관정서"라 함은 은행과 판매업체 간에 체결되는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판매업체 이용약관정서」를 말합니다.
19. "중심업체 이용약관정서"라 함은 은행과 중심업체 간에 체결되는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중심업체 이용약관정서」를 말합니다.
20. "서비스 이용약관정"이라 함은 판매업체 이용약관정서 또는 중심업체 이용약관정서(또는 중심업체 업무협약서)를 말합니다.

제4조(판매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 부존재)

은행은 팩토링 실행 이후 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5조(판매업체 서비스 이용약관정의 체결 및 해지)

- ① 판매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판매업체는 은행과 서비스 이용약관정을 체결합니다.
- ③ 판매업체는 서비스 이용약관정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업체가 서비스 이용약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은행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서비스 이용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약관정의 효력은 팩토링 채권의 상환시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약관정 및 팩토링 실행 제한 사유)

- ① 은행은 다음 각 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업체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판매업체
- ② 은행은 다음 각 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정 및 팩토링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업체 팩토링 실행잔액의 합이 은행과 중심업체간 협약된 팩토링 서비스 총한도를 초과한 경우
 - 2.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심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채권(예금 등), 담보제공자산 대상으로 (가)압류 통지, 강제집행 개시, 체납처분 압류통지, 체납처분 착수가 발생하는 경우
 - 3. 중심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은행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
 - 4. 은행이 보유중인 중심업체 또는 판매업체 여신이 불건전 여신(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의 여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 5. 은행이 최근 5년 이내 중심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은행보유 여신을 대상으로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
 - 6. 은행이 최근 5년 이내 중심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은행보유 여신을 대상으로 이자유예 등 정상적인 이자수납을 하지 못한 경우
 - 7. 중심업체가 정산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 미지급하는 경우
 - 8. 중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9. 중심업체에게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판매업체의 정산채권에 (가)압류 통지, 강제집행 개시, 체납처분 압류통지, 체납처분 착수가 발생하는 경우
 11. 판매업체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발생 및 은행 내규에 의해 취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판매업체가 대상 정산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중심업체가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약정 및 실행 제한 사유를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별도 안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시간 변경을 포함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① 판매업체의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② 판매업체가 팩토링 신청한 대상 정산채권에 대하여, 판매업체는 타기관과 중복하여 팩토링을 신청하거나, 대상 정산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및 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은행은 중심업체가 전자적장치를 사용하여 통지한 정산채권 정보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다.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라. 이용자가 위 다목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마.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9조(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 ① 판매업체는 판매업체 이용약관을 체결함과 동시에 정산채권의 양도통지 권한을 은행에 위임합니다.

- ② 중심업체 및 PG사로부터 대상 정산채권 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판매업체를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 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및 승낙을 중심업체 및 PG사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③ 판매업체는 제1항 및 2항의 대리권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에 따라 은행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팩토링 실행시 중심업체의 채권양도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팩토링을 실행합니다.

제10조(약관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익을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으로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E-mail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의제기)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법령 및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